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2015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 세부계획

2015.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함께서울 서울특별시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 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 세부계획

여성정책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5년도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이 행복한 서울만들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평가 개요

☐ 법적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6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 추진 방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

○ 분야별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평가의 타당도·신뢰도 확보

○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구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 확산

☐ 평가 주요내용

○ 사 업 명 : 여성·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평가분야 : 여성정책 외 1개 분야

○ 평가기간 : 2015. 1. 1 ~ 9.30(평가시기 : ′15.10월)

○ 인센티브 : 500백만원

○ 우수기관 수상 : 12개구(최우수 2개, 우수 4개, 장려 6개)

2 평가지표 주요내용

□ 지표체계 및 배점방식

○ **지표체계 : 2개분야 5개항목 13개지표**

– 자치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지표수 대폭 축소

– 핵심사업 위주로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수립, 평가 곤란한 지표 제외

○ **배점방식**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지표 83%, 정성지표 17% 배분

– 사업 중요도에 따라 배점 조정, 평가항목별 5등급 체계 통일

◆ **상대평가 척도 : 5등급**
⇒ 1등급(1~5위), 2등급(6~10위), 3등급(11~15위),
4등급(16~20위), 5등급(21~25위)

◆ **등급별 배점** : 등급별 배점간격을 균등하게 조정

□ 평가 방법

○ **분야별 담당부서 평가 후 종합평가 실시**

– 1차 평가 : 분야별 담당부서 평가

– 2차 평가 : 심의위원회 구성(외부 전문가 및 공무원) 후 종합평가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종합평가 계획 별도수립(10월중)

○ **지표별 배점등급에 의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행**

□ 평가지표 개선방향 검토

○ **자치구 여성정책 우수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치구에서 추진한 우수사업을 별도 평가항목으로 선정 후 가점 반영 검토**

○ **내실있는 평가와 실질적인 여성정책 개선을 위하여 다음년도 평가지표를 전년도 연말까지 확정 후 자치구 통보**

□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수렴

○ **자치구 여성정책 소관과장 회의 실시**
– 일시 및 장소 : ´15. 3.17(화) / 시청3층 회의실(참석:25명)
– 주요내용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지표 설명 및 의견 수렴

○ **전문가 회의(2회)를 개최하여 평가의 주관을 배제하고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등 객관적 선정**

○ **여성정책 평가지표에 대하여 자치구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 반영**
– 의견수렴 : ´15. 3.18 ~ 3.20(3일간) ※ 자치구에 공문시행

○ 자치구 의견 반영내용

지표	자치구 의견	조정 내용
* 우수기관 수상	◦ 최우수구 2개구 시상을 4개 구로 확대 요청	◦ 평가시 확대여부 검토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 성별영향분석평가 신규과제 발굴 건수 등급별 비율 조정 ◦ 최근3년간 분석평가를 많이 한 자치구가 불리하므로 평가지표 산식 수정 요청	◦ 1등급 비율을 기존 60% 에서 50% 조정 및 각 등급 10% 하향 조정 ◦ 심사시 분석평가를 많이 한 자치구에 추가점수 부여 검토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 확보	◦ 여성관리직 비율 및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 조정	◦ 등급 비율 10% 하향조정
여성일자리 확대 및 지원	◦ 여성일자리 취·창업 실적을 전년 대비 증감율로 평가할 경우 전년도 실적이 낮은 자치구가 유리하므로 조정 요청	◦ 여성일자리 취·창업 실적 평가지표 제외
건강가정 조성 지원 및 가족정책 특화 사업 수립추진	◦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자치 구에 유리한 지표로서 배점 조정 필요	◦ 각 자치구별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 곤란하므로 조정 곤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은 자치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항이므로 변경 요청 ◦ 양적인 개 수보다는 수용인원 수에 따른 배점 요청	◦ 각 자치구별로 어린이집 수, 수용인원 등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 곤란하므로 조정 곤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환수금액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정적 지표로서 평가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음	◦ 환수조치율 평가지표 제외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기준	*평가 방법	배점
2개 분야	5개항목	13개지표	◦ 정량지표 : 83% ◦ 정성지표 : 17%		100
실질적 성평등 구현 (67)	성주류화 정책 확산 (25)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 신규과제 발굴 및 개선안 반영 실적 (10) ◦ 성인지 강화 및 시민참여 실적(3)	①/ ⓐ+ⓑ ②/ ⓐ	13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	◦ 성인지교육 이수 공무원 비율(3) ◦ 관리자 공무원 교육 이수 인원(3)	①/ ⓐ ①/ ⓐ	6
		정책과정의 여성 대표성 확보	◦ 관리직 여성공무원 및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6)	①/ ⓐ	6
	건전가정 조성 (16)	건강가정 조성 지원 및 가족정책 특화사업 추진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실적(3) ◦ 건강한 가족 문화조성을 위한 자체 특화 사업 추진실적(5)	①/ ⓐ ①+②/ ⓑ	8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다둥이 행복카드 추진실적(5) ◦ 세살마을 부모교육(3)	①/ ⓑ ①/ ⓑ	8
	일자리 및 안전환경 조성 (26)	여성일자리 확대 및 지원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지원 계획수립(6) ◦ 여성협동조합 활성화(4)	②/ ⓑ ①/ ⓐ	10
		여성 안전서울 추진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실적(5) ◦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추진(3) ◦ 여성안심지킴이 집 현장점검 실적(4) ◦ 여성폭력 없는 안전서울 추진실적(4)	①/ ⓑ ①/ ⓐ ①/ ⓐ ②/ ⓐ	16
보편적 돌봄 체계 구축 (33)	육아의 공공성 강화 (2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확충 시설수(9) ◦ 평가기준 시점 국공립 설치비율(3)	①/ ⓑ ①/ ⓑ	12
		수요자 맞춤보육 및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 확대	◦ 맞춤보육 서비스 이용율(2) ◦ 시간제 시설수 · 서비스 제공시간(2)	①/ ⓑ ①/ ⓐ	4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센터운영 사업실적(4) ◦ 보육반장 사업실적(3)	①/ ⓐ ①/ ⓐ	7
		회계관리 및 특별 활동비 투명성 강화	◦ 회계관리 및 특별활동 공개내역(2)	①/ ⓑ	2
	보육 서비스 향상 (8)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지도점검률 및 환수조치율(3) ◦ 안전교육 참여율 및 평가인증율(3)	①/ ⓑ ①/ ⓑ	6
		대체교사 지원 활성화	◦ 대체교사 지원실적 및 노력도(2)	①+②/ ⓑ	2

※ 평가방법 ①:정량평가, ②:정성평가 / ⓐ:절대평가 ⓑ:상대평가

3 행정 사항

☐ 인센티브 지원(안)

○ 최우수(2) : 2개구 × 90백만원 = 180백만원

○ 우 수(4) : 4개구 × 50백만원 = 200백만원

○ 장 려(6) : 6개구 × 20백만원 = 120백만원

☐ 우수 자치구 표창 실시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 표창 세부계획 별도 수립(11월 중)

☐ 추진 일정

○ 여성정책 종합평가계획 통보(자치구) : ‘15. 4월

○ 여성정책 종합평가 심사계획 수립 : ‘15. 9월

○ 평가자료 제출(자치구) : ‘15.10월

○ 최종평가 결과 발표(자치행정과 · 자치구 통보) : ‘15.11월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 ‘15.12월

평가지표별 설명서 및 제출양식

☐ 성주류화 정책 확산 (3개 지표)

평가지표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13점)
평가목적	○ 자치구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시행 확대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지성을 강화하고 자치구의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개선 유도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내용 - 신규작성 과제 발굴 건 수 비율 : 2016년도 사업 대상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신규작성 과제 - 분석평가 개선안 반영실적 : 개선의견에 대한 사업부서 반영결과 - 성인지 강화 및 시민참여실적 : 성인지 통계, 젠더거버넌스 운영, 현장모니터링, 간담회 운영실적 등 ○ 평가방법 : 정량평가+정성평가 / 절대평가+상대평가
측정지표	○ 신규과제 발굴 및 개선안 반영실적(10점) - 신규과제 발굴 건 수 비율 = 2016년 신규작성 사업과제 수 (2015년 작성하지 않은 과제) / 최근3년(2013~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사업과제 수 평균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안 반영 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안 반영 실적 = 분석평가서 작성시, 제안된 개선안에 대한 실제 반영 건수 ※ 제안된 개선안 : 사업담당자가 제안한 개선안과 반영결과 제출서에 수용/일부수용한 개선안 모두를 말함 ※ 실제 반영 건수 : 제안된 개선안 내용이 2015년 사업계획 또는 집행시 반영된 것을 말함 ○ 성인지 강화 및 시민참여 실적(3점) ※ 젠더거버넌스 운영, 성인지통계 작성, 현장 모니터링, 간담회 운영실적, 시민의견 반영자료 등의 실적에 대하여 각 1점씩 부여

배 점	○ 신규작성 과제 발굴 건 수 비율(5점) : 정량평가/절대평가 - 50% 이상 5점, 40%~50% 4점, 30~40% 3점, 20~30% 2점, 10~20% 1점 ○ 분석평가 개선안 반영 실적(5점) : 정량평가/상대평가 - 1등급 : 5점(1위~5위), 2등급 : 4점(6위~10위), 3등급 : 3점 (11위~15위) 4등급 : 2점(16위~20위), 5등급 : 1점(21위~25위) ○ 성인지 강화 및 시민참여 실적(3점) : 정성평가/절대평가 - 성인지통계 자료작성, 젠더거버넌스 운영, 기타 성인지 강화 실적 및 시민참여 실적에 대하여 실적마다 1점씩 부여 ▸ 성인지통계 자료작성, 시민현장 모니터링, 시민의견 반영자료, 주민대상 간담회 혹은 토론회 진행, 회의 운영 (과제선정/ 우수사례 선정/환류점검 등), 기타 성인지 강화실적 ※ 젠더거버넌스란,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시민과 관련단체 및 기관, 전문가, 행정의 책임자 및 담당자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선정 및 개선안 논의, 우수 사례 선정, 환류점검 등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운영 및 성주류화를 위한 논의 및 결정의 전 과정을 말함
제출자료	1.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 작성양식 : A-1 2. 2016년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근거자료1 사업에 대한 개선안 반영결과 : A-2 근거자료2 성인지 강화 및 시민참여 활동 실적현황 자료

〈작성양식〉

○ (A-1)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구분	최근3년 평균 과제수				신규과제 수
	2013	2014	2015	평균	
건수	71	79	85	78.3	60

구분	실,국,본부	부서명	대상 과제명	신규/지속 (2014년도 작성 여부)
1	사회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 주민교육 (마을공동체 교육)	지속
2	사회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ooo 사업	신규
3	사회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ooo 사업	신규
4	사회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지속
5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지속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부모커뮤티니 활성화 지원 사업	지속
7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ooo 사업	신규
8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속
9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ooo 사업	신규
10	정보기획단	데이터센터기획관리과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지속
1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시민생활안전체험(민방위교육장 운영)	지속
1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창조전문인력 양성	지속
13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ooo 사업	신규
14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지속
15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ooo 사업	신규

○ (A-2) : 사업에 대한 개선안 반영 결과

연번	과제명	검토 의견	2014년도에 제출된 개선안	2015년도 실제 반영된 내용	근거서류
1	커뮤니티 공간운영 지원 (마을공동체담당관)	원안 동의	◦ 마을공동체 사업선정 심의회 운영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사업지침에 규정할 계획 ◦ 커뮤니티 활용공간 주요 참여자 및 이용자 구성원 분석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 사업지침에 성별 균형을 고려함	관련공문 및 자료제출
2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개선 의견	◦ 협동조합 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중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육할 계획 ◦ 지원대상 선정시, 여성참여(경제활동) 고려 가점부여 방식 권고 ◦ 실태조사 평가항목에 조합원과 이사진 성별분석 반영 ◦ 교육 및 컨설팅시 성별 수요고려	◦ 여성 경제활동 제고 프로그램 개설 ◦ 협동조합 선정시, 여성참여 가점 부여 (혹은 권고함) ◦ 실태조사시 성별 분석 반영	◦ 교육 프로그램 홍보물 ◦ 협동조합 공고문(공문 000호) ◦ 실태조사 결과물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전문가 검토 후 개선안 반영 인정여부 결정)

평가지표	○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 (6점)
평가목적	○ 성인지 교육 확산을 통해 여성정책 부서 등 자치구 전체 공무원 성인지 인식 제고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내용 - 자치구 공무원 중 성인지 교육이수 공무원 비율 및 교육수료 인원 - 교육과정명과는 상관없이 교육과정 운영계획서(교과편성, 시간계획)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4시간 이상 포함(사이버교육 불인정) ※ 교육 인정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자치구 자체 시행교육 인정) ○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절대평가
측정지표	○ 성인지교육 이수 공무원 비율 (현원은 인사시스템상 '15. 9.30 기준) $= \frac{\text{성인지 교육 이수 공무원 수}}{\text{자치구 전체 공무원 현원}} \times 100$ ○ 6급이상 관리자 성인지 전문기관 교육 이수 인원
배 점	○ 성인지교육 이수 비율(3점) : 정량평가/절대평가 - 1등급(3점) : 자체교육이수 비율이 50% 이상 또는 위탁교육 실시율이 25% 이상인 경우 - 2등급(2.5점) : 자체교육이수 비율이 40%~50%(위탁교육 20%~25%) - 3등급(2점) : 자체교육이수 비율이 30%~40%(위탁교육 15%~20%) - 4등급(1.5점) : 자체교육이수 비율이 20%~30%(위탁교육 10%~15%) - 5등급(1점) : 자체교육이수 비율이 10%~20%(위탁교육 5%~10%) ※ 기관장 참여시 추가 배점 (1회당 0.1점) ○ 6급이상 관리자 전문기관 교육 이수 인원(3점) : 정량평가/절대평가 - 1등급(3점) : 외부 전문교육기관 50명 이상 수료 - 2등급(2.5점) : 외부 전문교육기관 40~50명 미만 - 3등급(2점) : 외부 전문교육기관 30~40명 미만 - 4등급(1.5점) : 외부 전문교육기관 20~30명 미만 - 4등급(1점) : 외부 전문교육기관 20명 미만
제출자료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교과편성, 강사, 시간계획 포함) 공문 사본 2. 교육이수 관련 공문서 사본 및 증빙자료 : 이수자 명단 첨부(엑셀양식) (공문에 결재자 서명 표시: 배포문서 저장) ※ 작성양식 : A-3

〈작성양식〉 (A-3) : 성인지교육 이수비율 및 관리자 성인지 전문기관 이수인원

자치구 공무원 수 (현원)		성인지 교육 이수 공무원 수		성인지 교육 이수 공무원 비율	
		위탁교육	자체교육	위탁교육	자체교육
전체	( )명	( )명	( )명	( )%	( ) %
6급이상 관리자	( )명	( )명	( )명	( )%	( )%

자치구명	*구 분	교육과정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시간	교육인원	
						전체	관리자
계							

* 구분 : 1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 = 자체교육

평가지표	○ **정책과정의 여성대표성 확보** (6점)
평가목적	○ 정책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관리직 공무원 비율 및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 향상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내용 - 자치구 6급 이상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 - 법률, 대통령령,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위촉직이 있는 모든 위원회의 여성 위원수 비율 ○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절대평가
측정지표	○ 공무원의 여성관리직 비율 (기준일 : '15.9.30) $= \frac{\text{6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text{6급 이상 공무원 수}} \times 100$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기준일 : '15.9.30) $= \frac{\text{여성 위촉직 위원 수}}{\text{전체 위촉직 위원 수}} \times 100$
배 점	○ 공무원 여성관리직 비율 및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6점) : 정량평가/절대평가(공무원 여성관리직 비율 50%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50%) - 1등급(30%이상):6점 2등급(30%미만~25%):5점 3등급(25%미만~20%):4점 4등급(20%미만~15%):3점 5등급(15%미만):2점
제출자료	1. 공무원의 여성관리직 비율 및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관련 공문 ※ 작성양식 : A-4-①, A-4-②

〈작성양식〉

○ (A-4-①) : 공무원의 여성관리직 비율

6급 이상 전체 공무원 수(a)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수(b)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b/a) × 100
( )명	( )명	( )%

○ (A-4-②) :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 위원회 여성비율 총괄표

위촉위원수(a)	위촉직 여성위원수(b)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b/a) × 100
( )명	( )명	( )%

- 위원회별 여성위원 현황

연번	위원회명	전체위원(수)	여성위원(수)	담당부서
1				
2				
			총 여성위원 수 : ( )명	

☐ 건강가정 조성 (2개 지표)

평가지표	○ **건강가정 조성 지원 및 가족정책 특화사업 수립 추진** (8점)
평가목적	○ 건강가정조성을 위한 건강지원센터 활성화 및 홍보 독려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정책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및 지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실적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지원 건수 ※ 홍보, 예산, 장소, 기업연계 지원 등 - 가족정책 특화사업 추진실적 • 가족정책 특화사업 추진 건수 및 특화사업 내용 ※ 다양한 형태별(1인가구, 맞벌이 가구, 한부모가구, 수정확대가구 등) 가족 정책지원 사업 추진내용 ※ 건강가정 교육사업, 이혼, 가정폭력 등 가족해체요인 예방 등의 우수 정책 사례 등 ○ 평가방법 : 정량평가+정성평가 / 상대평가+절대평가
측정지표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실적 (3점)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예산·홍보·장소 등 지원실적 (3점) ○ 건강한 가족 문화조성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 추진실적 (5점) - 가족 정책 특화사업 추진 건수(2점) - 가족 정책 특화사업 내용 평가(3점) • 자치구별 지역·인구학적 특성 반영 여부 1점 • 사업내용 및 효과, 사업의 연속성 2점
배 점	○ 건강가정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지원실적 (3점) : 정량평가/상대평가 - 1등급 3점, 2등급 2.5점 3등급 2점, 4등급 1.5점, 5등급 1점 ※ 1등급(1~5위), 2등급(6~10위), 3등급(11~15위), 4등급(16~20위), 5등급(21~25위) ○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 (5점) - 가족정책 특화사업 추진 건수(2점) : 정량평가/절대평가 • 4건 이상 2점, 3건 1.5점, 2건 1점, 1건 0.5점 - 가족정책 특화사업 내용 평가(3점) : 정성평가/절대평가 • 90점 이상 3점, 90점미만~70점이상 2점, 70점미만~50점이상 1점
제출자료	1. 증빙자료 : 홍보실적 등 (사진 스캔파일 등 1쪽 내외) 2. 가족정책 특화사업 우수사례(2쪽 이내) ※ 작성양식 : B-1, B-2

〈작성양식〉

○ (B-1) :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치구 지원실적**

연번	지원사항	지원내용(예시)	추진실적 등
1	홍보협조	• 00신문 00회	• 보도 내용 등
2	예산지원	• 00사업 예산지원	• 지출결의서 등 지원증빙 자료
3	장소지원	• 00사업 장소협조 00회	• 지원 장소 내역 등
4	기업연계 지원	• 찾아가는 아버지 학교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연계 협조	

○ (B-2) : **가족정책 특화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 추진개요

○ 사업목적 :

○ 운영기간 :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 소요예산 :

○ 추진부서 :

□ 추진내용

○

-

.

□ 사업성과

○

-

※ 사업내용에 따라 작성양식 변경가능 (2쪽이내)

평가지표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8점)
평가목적	○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발굴 및 관리운영 내실화 ○ 세살마을 부모교육 활성화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내용 -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발굴 및 관리실적 • 관리실적 : 모니터링(미스터리 쇼퍼)을 통한 실제 참여여부 등 평가 (가족담당관) - 세살마을 교육 목표대비 수료율 ○ 평가방법 : 정량평가+정성평가 / 절대평가 ※ 평가기간 : '15.1.1.~9.30 (단, 다둥이카드 발굴실적 평가기간 '14.10.1.~'15.9.30)
배 점	○ 다둥이 행복카드 협력업체 발굴 및 관리실적(5점) - 협력업체 신규발굴 건수(3점): 정량평가/절대평가 • 30건이상 3점, 25~29건 2.5점, 20~24건 2점, 15~19건 1.5점, 14건이하 1점 - 기존 협력업체 관리실적(2점): 정성평가/절대평가 • 90점이상 2점, 80~89점 1.6점, 70~79점 1.2점, 60~69점 0.8점 59점이하 0.4점 ○ 세살마을 교육 실적(3점) - 세살마을 교육 목표대비 수료율(3점): 정량평가/절대평가 • 95%이상 3점, 90~94% 2.5점, 85~89% 2점, 80~84% 1.5점, 79%이하 1점
제출자료	없음(자체집계 가능)

☐ 일자리 및 안전환경 조성 (2개 지표)

평가지표	○ **여성일자리 확대 및 지원** (10점)
평가목적	○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여성이 일하는 희망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유도 ○ 여성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지원하여 여성일자리 확대 모색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지원 계획수립 ○ 평가내용 - 자치구별 자체계획에 따른 추진결과, 신규사업 추진, 우수사례 등 평가 -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설치 및 운영실적 - 홍보실적 평가 ○ 평가방법 : 정성평가 / 상대평가 □ 여성협동조합 활성화 ○ 평가내용 : 여성협동조합 설립 수 ○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절대평가
측정지표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지원 계획수립 - 일자리 확충 ·지원 실적, 우수사례 등 평가 ○ 여성협동조합 설립 실적을 수치로 측정
배 점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지원 계획 (6점) : 정성평가/상대평가 - 1등급(1~5위) : 6점, 2등급(6~10위) : 5점, 3등급(11~15위) : 4점, 4등급(16~20위) : 3점, 5등급(21~25위) : 2점 ○ 여성협동조합 설립 실적(4점) : 정량평가/절대평가 - 1등급(4개이상 조합설립) : 4점 - 2등급(3개이상) : 3점 - 3등급(2개이상) : 2점 - 4등급(1개이상) : 1점 - 5등급 : 0점
제출자료	1. ○○구 여성특화일자리 확충 · 지원 추진실적 2. 여성협동조합 설치실적 ※ 작성양식 : C-1, C-2

〈작성양식〉

○ (C-1) : 여성특화일자리 확충 ·지원 계획수립 및 실적

사업명	

□ 추진계획 수립 : 예시) 000과-000(`15.3.2)

□ 사업내용

○ 사업명 : (계속)

- 소요예산 : - 추진부서 :

○ 사업명 : (확대)

- 소요예산 : - 추진부서 :

○ 사업명 : (신규)

- 소요예산 : - 추진부서 :

※ 사업명 뒤에 계속, 확대, 신규 중 1개 표기 할 것

□ 추진내용 및 결과

○

-

·

□ 사업 우수사례

○

-

○

-

□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 설치현황

○ 운영실적

-

-

※ 사업내용에 따라 작성양식 변경가능(2쪽이내)

☐ 홍보실적

사업명·제목	홍보매체 및 홍보방법	홍보실적	기간(일시)	효과(간략히 작성)
	포스터 부착	50매 부착		
	리플릿 제작	100매 제작		
	보도자료 배포	00일보 외 2		
	자치구 소식지	00여성인력개발센터		
	취·창업 설명회 개최			

※ 자치구 소식지 : 여성인력개발기관 홍보자료 게재 실적 포함

※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언론기관에 게재된 경우 1건으로 기재

○ (C-2) 여성협동조합 설치 실적

연번	조합명	사업내용	등록일시	비고

평가지표	○ **여성 안전서울 추진** (16점)
평가목적	○ 여성안전대책의 필수요소인 “서울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의 확대를 통하여 보다 여성이 안전한 도시 서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치구 노력 평가 ○ 여성안심지킴이 집 운영을 통한 성범죄 예방 도모 ○ 주민참여를 통한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내용 -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인원수 대비 안심귀가 실적 • 자치구별 제출한 추진실적(주보) 집계 - 여성안심택배사업의 확대 - 여성안심지킴이 집 현장점검 실적(현장안내 및 점검)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추진 ○ 평가방법 : 정량평가+정성평가 / 상대평가+절대평가
측정지표	○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 실적 - 안심귀가 지원 건수 / 안심귀가스카우트 인원수 ○ 무인택배함 설치 수 - 2개소 이상 설치 : 3점 - 1개소 설치 : 1.5점 ※ 기존 설치장소를 적정 장소로 이동 설치한 수 포함 ○ 여성안심지킴이집 현장점검 실적 - 1등급 : 4점, 2등급 : 3점, 3등급 : 2점, 4등급: 1점, 5등급 : 0점 • 1등급 : 5회 이상, 2등급 : 4회이상, 3등급 : 3회이상, 4등급 : 2회 이상, 5등급 : 1회이상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추진실적 지표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추진실적 • 최우수 : 2점, 우수 : 1.5점, 보통 : 1점, 미흡 : 0.5점 • 주민(여성) 참여인원, 주민 모니터링 인원, 취약지역 및 아동안전 지도 제작지역 환경개선 실적, 마을지킴이 양성교육 참여인원, 위험지역 순찰 횟수, 인원 등 평가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결과보고서 운영실적 평가

배 점	○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실적 (5점) : 정량평가/상대평가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인원수 대비 실적 • 1등급(1~5위) : 5점, 2등급(6~10위) : 4점, 3등급(11~15위) : 3점 4등급(16~20위) : 2점, 5등급(21~25위) : 1점 ※ 실적 건수 : 안심귀가지원 건수/안심귀가 스카우트 인원수 ○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추진 (3점) : 정량평가/절대평가 - 2개소 이상 설치 또는 이전 : 3점 - 1개소 설치 또는 이전 : 1.5점 ○ 여성안심지킴이 집 현장점검 실적(4점) : 정량평가/절대평가 - 1등급 : 4점, 2등급 : 3점, 3등급 : 2점, 4등급 : 1점, 5등급 : 0점 • 1등급 : 5회 이상, 2등급 : 4회이상, 3등급 : 3회이상, 4등급 : 2회 이상, 5등급 : 1회이상 ○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추진실적(4점) : 정성평가/절대평가 - 최우수 : 4점,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제출자료	1. 여성안심지킴이 집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 증빙자료(홍보물 캡쳐 사진 등) : 작성양식 (C-3) 2.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결과보고서 - 관련 사진, 사전/사후 비교 등 자료 제출(※ 별도 작성양식 없음)

〈작성양식〉 (C-3) : 여성안심지킴이 집 현장점검 실적

연번	일 시	대 상(곳)	현장점검 내용	비 고
1				
2				
3				

총 현장점검 실적 : ( )건

☐ 육아의 공공성 강화 (4개 지표)

평가지표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2점)
평가목적	○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유도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 수 및 설치율 - 평가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통과시설 수 : 확충심의 통과 시설당 1점 (SH공사 또는 LH공사 소유의 공동주택내 설치시는 0.5점) ※ 유휴교실 활용 및 도시공원내 설치시 0.5점 추가 배점 • '15년 평가시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율 ○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상대평가
측정지표	○ 산식 : (A)+(B)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통과 시설수 점수(A) • 확충심의 통과시설수의 총합이 가장 높은 자치구를 9점 기준으로 차등 점수 부여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율 점수(B)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를 3점 기준으로 차등 점수 부여 ※ 구체적인 점수는 평가심사시 심사위원들 협의 후 결정
배 점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통과 시설수(9점) : 정량평가/상대평가 - 확충심의 통과 시설당 1점 (SH공사 또는 LH공사 소유의 공동주택내 설치시는 0.5점) ※ 유휴교실 활용 및 도시공원내 설치시 0.5점 추가 배점 ○ '15년 평가시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율(3점) : 정량평가/상대평가
제출자료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요청 자료(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2.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자료

<table>
<tr><td>평가지표</td><td>○ 수요자 맞춤보육 및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 확대 (4점)</td></tr>
<tr><td>평가목적</td><td>○ 가정양육, 맞벌이가정 및 시간선택제 근로 등 육아환경의 다양화에 따라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간연장, 휴일보육시설, 시간제보육실 등 확대하여 맞춤보육 서비스 강화</td></tr>
<tr><td>평가내용 및 평가방법</td><td>○ 평가내용 : 맞춤보육 어린이집(시간연장, 다문화, 장애아, 휴일보육) 이용률, 시간제보육 운영 시설 및 평균이용시간
- 평가기준
<table><tr><td>맞춤보육 서비스 제공(이용률)</td><td>※ 최대2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취약보육 실시율)활용</td></tr><tr><td>시간제 보육시설 운영수반당 서비스 제공시간(월)</td><td>※ 3개이상 운영 및 월 300시간 이상 2점
2개 운영 및 월 200시간 이상 1.5점
1개 운영 및 월 200시간 이상 1점
1개 운영 및 월 150시간 이상 0.5점</td></tr></table>○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상대평가+절대평가</td></tr>
<tr><td>측정지표</td><td>○ 맞춤보육 운영점수(2점)
- 맞춤보육 이용률 : 이용 아동수/전체 어린이집 현원
○ 시간제보육 운영점수(2점)
- 시간제보육 운영 시설수 및 반당 서비스 이용실적</td></tr>
<tr><td>배 점</td><td>○ 맞춤보육 서비스제공(이용률)(2점) : 정량평가/상대평가
- 1등급 2점, 2등급 1.6점, 3등급 1.4점, 4등급 0.8점, 5등급 0.4점
※ 1등급(1~5위), 2등급(6~10위), 3등급(11~15위), 4등급(16~20위), 5등급(21~25위)
○ 시간제보육 운영(2점) : 정량평가/절대평가
- 시설운영수 및 시간제보육 이용시간</td></tr>
<tr><td>제출자료</td><td>1. 맞춤보육 이용률(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자료 활용)
※ 작성양식 : D-1</td></tr>
</table>

〈작성양식〉(D-1) : 맞춤보육 이용률

시간연장+다문화+장애아+휴일보육 이용아동 수(a)	전체 어린이집 현원 (b)	맞춤보육 이용률(c)=(a÷b) x 100
( )명	( )명	( )%

<table>
<tr><td>평가지표</td><td>○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7점)</td></tr>
<tr><td>평가목적</td><td>○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td></tr>
<tr><td>평가내용 및
평가방법</td><td>○ 평가내용 :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육 및 컨설팅, 보육반장
- 평가기준
<table>
<tr><td>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2점)</td><td>‘재능기부 활용’ 또는 ‘지역연계형’ 참여 어린이집 수
- 자치구별 전체 어린이집 10.0% 이상 2점
- 자치구별 전체 어린이집 7.0~10.0% 미만 1점</td></tr>
<tr><td>아동학대 예방교육 추진
(1점)</td><td>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인권 선임교사교육 실적
- 자치구별 선임교사수 대비 70%이상 또는 월평균 3회이상 교육 1점
- 자치구별 선임교사수 대비 50%이상 또는 월평균 2회이상 교육 0.5점</td></tr>
<tr><td>교육 및 컨설팅 추진
(1점)</td><td>목표(방침기준) 대비 추진실적
- 100% 이상 1점, 90~99% 0.8점,
80~89% 0.6점, 70~79% 0.4점</td></tr>
<tr><td>보육반장 사업(3점)</td><td>○ 영유아전입가정 동의자 명단 매월 제출(1점)
※ 동주민센터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 부모자조모임 신규결성, 3개월 이상 지속 및 사업 적극홍보
- 자조모임 6건이상 및 홍보 4건 2점
- 자조모임 4건이상 및 홍보 2건 1점
- 자조모임 2건이상 및 홍보 1건 0.5점</td></tr>
</table>
○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절대평가</td></tr>
<tr><td>측정지표</td><td>○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 ‘재능기부 활용’ 또는 ‘지역연계형’ 참여 어린이집 수
※ 자치구별 전체 어린이집 수 : ‘14.12월말 기준
○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진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인권 선임교사 교육 실적
○ 교육 및 컨설팅 추진
- 부모인식 개선(대집단, 소집단 교육) 및 맞춤컨설팅 추진실적
※ (부모인식 개선 실적 + 맞춤컨설팅 실적)/2
○ 보육반장사업추진 점수
- 영유아 전입자가정 동의자 명단제출 +부모자조모임 및 사업 적극홍보</td></tr>
</table>

배 점	○ 센터운영 사업실적 횟수 (4점) : 정량평가/절대평가 -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운영 : 2점 - 아동학대 예방교육 : 1점 - 교육 및 컨설팅 추진 : 1점 ○ 보육반장 사업실적 건수 (3점) : 정량평가/절대평가 - 영유아전입가정 동의자 명단 매월 제출 : 1점 - 부모자조모임 신규결성 후 3개월이상 지속 및 사업 적극홍보 : 2점
제출자료	1.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2. 실적보고서(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육 및 컨설팅 추진) 3. 전입자가정 보육반장 서비스 이용동의자 명단 매월 제출현황(매월확인) 4. 부모자조모임 추진 실적보고서(사업계획, 진행과정, 성과 등) 및 사업안내(홍보) 실적

<table>
<tr><td>평가지표</td><td>○ 회계관리 및 특별활동비 투명성 강화 (2점)</td></tr>
<tr><td>평가목적</td><td>○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 유도, 특별활동 관련 사항 공개를 통하여 어린이집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td></tr>
<tr><td>평가내용 및 평가방법</td><td>○ 평가내용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률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회계 및 관리내역 실제 자료 입력
-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에 특별활동 관련 내용 공개한 실적
○ 평가기준
<table><tr><td>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누적 사용률</td><td>(시스템 사용 어린이집 수/전체 어린이집수)×100
※ 직장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수 및 시스템 사용 어린이집 수에서 제외</td></tr><tr><td>비의무대상 시설 중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신규 사용률</td><td>(비의무대상 시설 중 신규 사용 어린이집 수/비의무대상 어린이집 수)×100
※ 비의무대상 시설 :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외 일반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제외)</td></tr><tr><td>특별활동 공개내역</td><td>○ 필수 공개항목
- ①과목 ②비용 ③대상연령 ④강의시간 ⑤업체명 및 강사 ⑥수강인원 ⑦주요경력
※ 서울시가 기 시달한 특별활동 공개신청서 항목과 일치
○ 공개실적 : 서울시 보육포털에 필수 공개항목 7개가 모두 입력된 경우 1건으로 처리
○ 공개실적 산정방식
- 공개실적 / 어린이집 총수 × 100
※ 특별활동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공개한 것으로 간주</td></tr></table>○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상대평가</td></tr>
<tr><td>측정지표</td><td>○ 회계관리 공개내역 점수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누적사용률 + 비의무대상시설 중 관리시스템 신규사용률
○ 특별활동 공개내역 점수
- 공개실적 / 어린이집 총 갯수 × 100</td></tr>
</table>

배 점	○ 회계관리 및 특별활동 공개내역(2점) : 정량평가/상대평가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누적 사용률(0.5점) • 실적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 0.5점 부여 후 실적에 비례하여 차감 - 비의무대상 시설 중 관리시스템 신규 사용률(0.5점) • 실적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 0.5점 부여 후 실적에 비례하여 차감 - 특별활동 공개율(1점) • 산출식(공개 어린이집 수/ 전체 어린이집 수×100)에 따라 등급결정 ※ 등급부여 : 1등급 2점, 2등급 1.6점, 3등급 1.2점, 4등급 0.8점, 5등급 0.4점 ※ 1등급(1~5위), 2등급(6~10위), 3등급(11~15위), 4등급(16~20위), 5등급(21~25위)
제출자료	1.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누적 사용률 외 2건(D-2, D-3, D-4,)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및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 등록자료 활용

〈작성양식〉

○ (D-2)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누적 사용률**

전체 어린이집 수(a)	시스템 사용 어린이집 수(b)	시스템 사용률(c) =(b÷a)×100
( )개소	( )개소	( )%

○ (D-3) : **비의무대상 시설 중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신규 사용률**

비의무대상 어린이집 수(a)	비의무대상 시설 중 신규 사용 어린이집 수(b)	누적 사용률(c) =(b÷a)×100
( )개소	( )개소	( )%

※ 비의무대상어린이집(a)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및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D-4) : **서울시 보육포털에 특별활동 공개 어린이집 비율**

어린이집 총 갯수(a)	공개실적(b)	서울시 보육포털에 특별활동 공개 어린이집 비율(c) =(b÷a)×100
( )개소	( )건	( )%

☐ 보육서비스 향상 (2개 지표)

평가지표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6점)
평가목적	○ 실효성 있는 자치구 자체 지도점검 및 정부평가인증유지율 제고를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관리 의식제고 및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내용 - 지도 점검률(1.5점) = 점검어린이집 수 ÷ 전체어린이집 수 × 100 - 행정 조치율(1.5점) = 점검어린이집 수 ÷ 시정명령 이상 건수 × 100 - 안전교육 참여율 및 정부평가인증율 증가율(3점) • 안전교육 참여어린이집/관내어린이집 x 100 ※ 인센티브 부여대상 안전교육 추후 확정통보 • 기준시점대비 정부평가인증유지율 증가율 ○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상대평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지도점검 등록 기준
측정지표	○ 지도점검률 및 환수조치율 점수 - 지도점검률+행정조치율 ○ 안전교육 참여율 점수 및 '정부평가인증율' 증가율 - 교육참여어린이집/관내어린이집 x 100 - 전년대비 정부평가인증율 증가율
배 점	○ 지도점검률 및 환수조치율(3점) : 정량평가/상대평가 - 지도 점검률(1.5점) ※ 기본점수 0.2점 부여 •실적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 1.5점 부여 후 실적에 비례하여 차감 - 행정 조치율(1.5점) ※ 기본점수 0.1점 부여 •실적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 1.5점 부여 후 실적에 비례하여 차감 ○ 안전교육 참여율 및 정부평가 인증유지율(3점) : 정량평가/상대평가 - 안전교육 참여어린이집/관내어린이집 순위에 따라 등급결정(2점) - 전년대비 인증유지 증가율 순위에 따라 등급결정(1점) • 1등급 3점, 2등급 2.4점, 3등급 1.8점, 4등급 1.2점, 5등급 0.6점 ※ 1등급(1~5위), 2등급(6~10위), 3등급(11~15위), 4등급(16~20위), 5등급(21~25위)
제출자료	1. 지도 점검률 2. 행정 조치율 3. 안전교육 참여율 ※ 작성양식 : (D-5), (D-6), (D-7)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등록 자료 활용.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요청)

〈작성양식〉

○ (D-5) : **지도 점검률**

점검 시설 수(a)	전체 어린이집 수 (b)	점검률(c)=(a÷b) × 100
( )개소	( )개소	( )%

○ (D-6) : **행정 조치율**

시정명령 이상 건수(a)	점검 어린이집 수 (b)	조치율(c)=(a÷b) × 100
( )건	( )개소	( )%

○ (D-7) : **안전교육 참여율**

참여 어린이집 수(a)	전체 어린이집 수 (b)	참여율(c)=(a÷b) × 100
( )개소	( )개소	( )%

평가지표	○ **대체교사 지원 활성화** (2점)
평가목적	○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지원을 활성화하여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내용 - 대체교사 지원 실적 - 대체교사 지원을 위한 노력도 ○ 평가방법 : 정량평가+정성평가 / 상대평가
측정지표	○ 산식 : 정량평가(A)+정성평가(B) - 대체교사 지원 실적 점수(A)=(2a+b)/3 • 육아종합지원센터 파견(a) : 대체교사 파견 횟수/(대체교사 수 × 52회) • 인건비 지원(b) : 지원 횟수/구내 반담임 보육교사 수 ※ ① 횟수 : 5일 지원 시 1회 ② 대체교사 수 : 대체교사 관리자(1명)를 제외한 수 ③ 최고 점수 획득한 자치구 실적을 1로 환산하여 비례적용 ④ 인건비지원 대비 파견실적에 2배 가중치 부여 - 대체교사 지원을 위한 노력도 점수(B)=c+d+e • 타 자치구 파견 지원(c) : 0.2 • 적극안내 노력(d) : 0.4 • 대체교사 전문화 및 탄력적 지원노력(e) : 0.4
배 점	○ 대체교사 지원 실적 및 노력도(2점) ○ 등급부여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합산한 점수 - 1등급 : 2점, 2등급 : 1.6점, 3등급 : 1.2점, 4등급 : 0.8점, 5등급 : 0.4점 ※ 1등급(1~5위), 2등급(6~10위), 3등급(11~15위), 4등급(16~20위), 5등급(21~25위)
제출자료	1. 대체교사 파견실적(육아종합지원센터) 2.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실적(자치구) 3. 어린이집 적극안내 자료(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4. 인력풀 운용 현황자료(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5. 실무교육 증빙자료, 보육관련 자격증 보유현황 자료 등(육아종합지원센터) ※ 작성양식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 활용